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문제편 225~225p 번호 : 24	문제-보기(지문)	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월별 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내용이다. (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()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월별 보험료의 (ㄴ)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이미 발생한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월별 보험료의 (ㄷ)을 넘지 못한다.	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② ㄱ: 1, ㄴ: 3 천분의 1, ㄷ: 1천분의 90	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월별 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내용이다. (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(ㄱ)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월별 보험료의 (ㄴ)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이미 발생한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월별 보험료의 (ㄷ)을 넘지 못한다.		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② ㄱ: 1, ㄴ: 6 천분의 1, ㄷ: 1천분의 50			
수정 사유	법개정에 따른 수정		
해설편 359~359p 번호 : 24	해설	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월별 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내용이다. (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()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월별 보험료의 ()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이미 발생한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월별 보험료의 ()을 넘지 못한다.	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② ㄱ : 1, ㄴ : 3천분의 1, ㄷ : 1천분의 90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, 그 밖의 징수금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,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(징수법 제25조 제3항).	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월별 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내용이다. (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(ㄱ)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월별 보험료의 (ㄴ)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이미 발생한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월별 보험료의 (ㄷ)을 넘지 못한다.		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② ㄱ : 1, ㄴ : 6천분의 1, ㄷ : 1천분의 50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, 그 밖의 징수금의 6 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,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50 을 넘지 못한다(징수법 제25조 제3항).			
수정 사유	법개정에 따른 수정		
해설편 391~391p 번호 : 21	해설	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? ①~③ 변경 없음 ④ 사업주가 법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 연체금의 징수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, 그 밖의 징수금의 1천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 한다(징수법 제25조 제1항).	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⑤ 변경 없음	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? ①~③ 변경 없음 ④ <u>사업주가 법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 연체금의 징수</u>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,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<u>지날</u>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, 그 밖의 징수금의 1천 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. <u>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</u> (징수법 제25조 제1항).		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⑤ 변경 없음			
수정 사유	법개정에 따른 수정		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